

상 품 요 약 서

준법감시인 심의필 2021 제528호 (2021. 08. 12)

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KB대중교통재해보장보험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◆ 상품의 특이사항

Q1. 무배당 KB대중교통재해보장보험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?
A : 무배당 KB대중교통재해보장보험은 “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”로 인한 사망 및 재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.
Q2. “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”는 무엇인가요?
A : 이 보험에서 “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”라 함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분류표(약관의 별표4 참조)에서 정의하는 사고를 말합니다.

◆ 보험가입자격요건

I. 보험종류

보험종목의 명칭	보험형태
무배당 KB 대중교통재해보장보험	순수보장형

II. 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기간,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

보험기간	보험료 납입기간	피보험자 가입나이	보험료 납입주기
1년만기	전기납	만19 ~ 75세	연납

III. 가입한도

(단위: 만원)

보험종목	보험가입금액	비고
무배당 KB 대중교통재해보장보험	1,000만원	단일한도

IV. 건강진단 여부

전건 무진단

◆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

I. 상품의 구성

주계약	무배당 KB대중교통재해보장보험
특약	+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(제도성)

II.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장내용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

□ 무배당 KB대중교통재해보장보험

[기준 : 보험가입금액 1,000만원]

급부명	지급사유	지급금액
대중교통재해 사망보험금	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“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 사고”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	5,000만원
대중교통재해 장애급여금	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“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 사고”로 인하여 장애분류표(약관 별표3 참조)에서 정한 각 장애지급률 중 3%이상 100%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	5,000만원 × 해당 장애지급률

주)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대중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, 피보험자가 “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“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.

III.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

1.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

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
1.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

다만,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이 보험 약관 제3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
2.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
다만,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.

3.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
2. 계약 전 알릴 의무에 관한 사항

-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(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)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(이하 ‘계약 전 알릴 의무’라 하며, 상법상 ‘고지의무’와 같습니다) 합니다. 다만,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(의료기관)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드리며,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,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(*)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, 일부 보장 제외, 보험금 삭감,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.
-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.

3. 계약의 무효

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. 다만,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.

- 1)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·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)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. 다만,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.
- 2) 만15세 미만자,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. 다만,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.
- 3)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. 다만,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,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

4. 사기에 의한 계약

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,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·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(HIV)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(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)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◆ 보험료 산출기초

I. 적용이율

Q :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?

A :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, 이 할인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,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.

무배당 KB대중교통재해보장보험에 적용한 이율은 연복리 2.7%입니다.

II. 적용위험률

Q :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?

A :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,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.

나 이	무배당 예정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재해사망률	
	남자	여자
단일률	0.000006	0.000002

나 이	무배당 예정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재해장해율	
	남자	여자
단일률	0.000008	0.000005

III.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

Q :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?

A :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,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.

◆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

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를 하며,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 무배당 KB대중교통재해보장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습니다.

◆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

I.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

Q :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,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?

A : 우리 KB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(해지공제액)를 공제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.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,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.

II. 해지환급금 예시

무배당 KB대중교통재해보장보험은 1년만기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◆ 보험가격지수

보험가격지수란?

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(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)을 참조순보험료 총액*과 평균사업비총액**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“보험가격지수”라고 합니다.

*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(평균공시이율)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

**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(역산)한 값

(기준: 40세)

상품명	보험기간(년)	납입기간(년)	보험가격지수		
			남자	여자	가입금액 (만원)
무배당 KB 대중교통재해보장보험	1	1	90.0%	81.9%	1,000

※ 상기 보험가격지수는 대표계약을 기준으로 예시한 것으로 실제 계약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.